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7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1,016,100,000	30,483,000
1. 일 반 회 계	617,200,000	18,516,000
2.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68,000,000	2,040,000
3.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94,000,000	2,820,000
4. 하 수 도 특 별 회 계	76,000,000	2,280,000
5.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350,000	10,500
6. 도 시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7,000,000	210,000
7.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	3,510,000	105,300
8.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	1,600,000	48,000
9.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특 별 회 계	47,800,000	1,434,000
10.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62,262,000	1,867,860
11.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 별 회 계	1,664,000	49,920
12. 경 영 수 익 사 업 특 별 회 계	6,565,000	196,950
13. 도 시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30,149,000	904,47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.

제 4 조 2007년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 30,000,000천원으로(천안축구센터 건립 23,000,000천원, 천안박물관건립 7,000,000천원) 한다.

제 5 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과 같다.

제 6 조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과 같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82,394천원으로 한다.